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16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1. 20

다. 상 정 일 자 : 제153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07.12.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양종호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2006. 12. 28 공직자 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사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기능 및 관할 조정(안 제3조제2항)
 - 구 및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만 관할
 - 4급이상 공무원 및 구의회의원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조항 신설(안 제6조제5항)
- 구의회에 위원회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위원회는 구의회 2차 정례회때 전년도 재산등록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3. 관계법령

- 공직자 윤리법 (제9조 제2항, 제20조의 2)
-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36조 제1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 개정안은

2006. 12. 28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변경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과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 첫째, 지금까지 우리구 및 우리구 의회소속공무원과 우리구의원은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이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구소속 5급이하 공무원만 우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하고, 4급이상 공무원과 구의원은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한 것으로 이는 2006. 12. 28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규정된 사항임.
- 둘째,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7. 6. 21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19조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시한 사항임.
- 셋째,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구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조항도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명시된 사항임.

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2006. 12. 28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2007. 6. 21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근간으로 조례개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